

## 차입원가 자본화 관련 위험회피효과와 외환차이에 대한 고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문단 6에서 차입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기술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3)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차입원가 자본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파생상품과 외환차이에 대해서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생상품평가손익(예: 이자율스왑 또는 외환스왑)을 자본화 하는 것은 적절한가?

아니오.

상기의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된다. 위험회피관계를 통해 기업의 차입활동과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른 차입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2. 특정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화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문단 BC21에서 기술되어 있듯이 기준서에서는 이러한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의 목적은 특정차입금과 관련한 기업의 차입원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관계가 있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적인 부분을 고려한 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3. 기업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적인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는 기업의 차입원가를 변경시킨다.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되지 않고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기준서 1023호 문단 14에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 아닌 일반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4. 기업은 외환차이 중 자본화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는 기업이 기능통화로 차입했다면 부담했을 차입원가와 외화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차입원가의 차이금액이다. 이와 달리 실업률, 생산성 또는 정권 변경 등의 다른 경제적 요인의 변경에 따라 환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다른 차이금액은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차입원가 포함될 외환차이의 금액의 추정에 적용될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IFRIC 실무진에 의해서 고려되었다.

- 외환차이 변동 부분은 차입금이 발생한 시점의 선도환율을 기초로 추정될 수 있다.
- 외환차이 변동 부분은 기업으로 기능통화로 차입된 유사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기초로 추정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은 외환차이 중 자본화될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 판단을 해야 한다.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은 회계정책의 선택이며, 그 방법은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인지에 관계없이 외환차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작성: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수미 이사

## 판매인센티브 회계처리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 1018 호 수익에서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4]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현금할인, 현금보조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현금판매인센티브는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켜 재화·용역의 매출로 인해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감소시키므로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 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의 경우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 2113 호에서는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의 경우에는 이를 복합거래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인센티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비용(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로 계상됨)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일부의 판매인센티브가 한국채택국제기준 하에서는 복합거래로 회계처리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다음의 사례들을 통하여 이러한 이슈에 대한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A 사는 DVD 플레이어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DVD 플레이어의 단가는 CU100 이다. A 사는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있다. 동 영화관람권의 액면가액은 CU10 이라 가정한다.

사례 1> A 사는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에서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고객은 동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무료 영화관람권을 수령할 수 있다.

사례 2> A 사는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 영화관람권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한다.

사례 3> A 사는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한다.

사례 4> A 사는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지급한다. (A 사는 고객에게 지급될 영화관람권을 미리 구매한다.)

판매인센티브 회계처리는 그 형식에 관계 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상기의 사례 1 과 2 는 복합거래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고객은 DVD 플레이어와 함께 영화관람권을 살 수 있는 보상점수 또는 증서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DVD 플레이어와 보상점수 또는 증서에 고객이 지급한 대가를 안분하여야 한다. 이 두 사례에서 A사는 영화표 판매와 관련하여 극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점수 또는 증서에 안분된 대가 중 A사의 자본증가에 기여하는 순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부분은 극장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사례 3 에서 A사는 판매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이다. 이는 현금판매인센티브의 경우로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감소시키므로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사례 4 는 사례 1,2 와 마찬가지로 복합거래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사례와의 차이점은 A사는 판매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A사는 영화관람권에 안분된 대가를 총액으로 수익인식하여야 한다.

작성: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유승경 회계사

## 기능통화의 결정

모든 기업은 각 기업별로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기능통화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문단 9~11에서는 기능통화를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로 정의하고, 각 기업별로 기능통화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주요지표

- ①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 ②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 ③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투입되는 노무원가, 재료원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 (2) 보조지표

- ① 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 ②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3)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러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지 판단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①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 ②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 ③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 ④ 보고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으로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 사례 1)

A사는 사이프러스에 소재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A사는 자기자본과 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러시아에 투자하며, 현재 러시아에 B, C, D의 종속기업이 있다. A사는 그룹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그룹

전체의 필요에 의해 여유현금을 투자하고 부족분은 차입한다. 대부분의 자금조달은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며 자산의 대부분도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이다. A사의 경영진은 해당 종속기업들의 기능통화를 소재국 통화인 러시아 루블화로 결정했다. 종속기업의 기능통화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가정한다.

## 사례 2)

K사는 스페인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배기업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재화를 수입하여 스페인 전역에서 유로화로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유로화 표시 가격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로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판매비와 영업비용은 스페인에서 발생하며 유로화로 지급된다. 장기차입금은 주로 지배기업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로 차입된다. 이익배분은 지배기업의 통제로 이루어진다.

매출과 현금유입의 지표로는 K사의 기능통화가 공급가격이 표시되고 결제되는 통화인 유로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재화의 공급가격은 단기간의 환율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스페인 국내의 경쟁환경과 관련법령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는 기능통화가 유로화라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비용과 현금유출의 지표로는 기능통화가 한가지 통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매출원가는 주로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고 결제되지만 스페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판매비와 영업비용은 유로화로 표시되고 결제되기 때문이다. 비용의 유의적인 부분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고 결제된다면 이 지표는 유로화가 기능통화라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주요지표가 전체적으로 유로화를 지지하기는 하나,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므로 보조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조지표는 미국 달러화가 기능통화라는 증거를 제공한다. K사의 장기 차입금이 주로 지배기업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로 차입되고 K사가 스페인 내의 외부 원천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K사는 영업으로부터 창출한 유로화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내 비용에 소요된 후의 잔여 유로화는, 지배기업에 관계사 채무를 결제하거나 배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 위 사례의 경우 A사와 K사의 적절한 기능통화는 무엇인가?

### 사례 1)

A사의 기능통화는 러시아 루블화이다. 지주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A사 이익의 주요 원천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통화는 러시아 루블화이다. A사가 차입금을 상환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러시아 경제에 의존한다.

### 사례 2)

K사가 미국의 지배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수입하여 스페인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판매대금을 지배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을 하는 지배기업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면 기능통화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미국 달러화가 될 것이다. K사가 지배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판매대금을 결제하여 관계기업간 거래 규모도 크다. 따라서, K사의 현금흐름은 지배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K사의 영업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된다면(즉, K사의 스페인 내 경영진이 차입을 일으키고 여유 현금을 투자하며 판매가격 조정 및 할인 제공과 직원의 고용 및 해고를 하는 등의 업무에 상당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K사의 기능통화는 지배기업과 별개로 결정된다. 이 때는 주요 지표가 전체적으로 유로화를 지지하므로 경영진은 기능통화를 유로화로 결정할 것이다.

기능통화의 결정은 기준서 제102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사항들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고려사항들이 명백히 어느 한 가지 통화를 나타내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문단 12).

작성: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윤경 회계사